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12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20 년 2 월 27 일

## I. 재판 경과

1. 2020 년 1 월 13 일, 중재판정부는 문서제출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청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제시하는 절차 명령 제 8 호를 발령하였다.
2. 2020년 2월 13일자 서한을 통해,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요구된 문서제출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의 설명과 추가 지시사항을 요청하였다.
3. 2020년 2월 19일자 서한을 통해,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2020년 2월 13일자 서한에 회신하였다.
4. 2020년 2월 24일자 서한을 통해,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2020년 2월 19일자 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5. 2020년 2월 25일자 서한을 통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년 2월 24일자 서한에 회신하였다.

## II. 중재판정부의 결정

6.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피청구국의 Redfern 일정에 명시된 청구인의 문서제출 범위와 관련된 2 건의 안건과 더불어 대한민국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의 소통내역과 관련된 2 건의 안건 등 총 4 건의 안건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다.

### A. 요청 제 1 번(화해합의서)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

7.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으로하여금 삼성물산에 연락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화해합의서의 공개 관련 동의를 구하고, 삼성물산과 소통한 모든 내역을 피청구국에게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8. 이에, 청구인은 이미 삼성물산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의 명령은 “청구인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근거가 부재하는 경우 불필요하다”고 확인한다. 청구인은 “화해합의서를 제출하고자 계획”중임을 표명한다.
9.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삼성물산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표명한 점을 고려하여 절차 명령 제 8 호를 통하여 청구인이 삼성물산에게 연락하라고 명령하지는 아니한 바, 다만 그렇게 할 청구인의 의지만 확인하였음을 상기한다.
10.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이미 삼성물산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화해합의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확인한다. 동 상황에서 중재판정부는 추가 지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다.

### B. 요청 제 7 번(스왑계약서)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

11. 피청구국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청구인이 요청 제 7 번에 해당하는 문서 중에 금융감독원에 사전제출하지 아니한 문서들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중재판정부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피청구국은 “요청 제 7 번에 해당하는 문서 중에

금융감독원에 사전 제출하지 아니한 추가 문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요청 제 7 번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해당 요청을 일체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한다. 피청구국은 요청된 문서가 이미 피청구국이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다는 데 “한하여” 요청 제 7 번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요청이 사실상 중재판정부가 요청 제 7 번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번복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요청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요청 제 7 번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중재판정부가 요청을 일체 불허하였고, 피청구국의 청구인에 대한 2015 년 6 월 이후의 문서 제출 요청을 분명하게 불허하였으며, 한국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문서들은 피청구국이 이미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가 사용한 ‘한하여’라는 단어를 구실로” “중재판정부가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구속적인 언어를 추가하려고 시도”한다는 견해이다.
13.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소유한 문서 중에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지 아니한 문서가 잔존하거나 이러한 문서에 관한 요청이 피청구국의 Redfern 일정에 명시된 피청구국의 요청 제 7 번 또는 동 요청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에 적시된 바가 없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동 문서제출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따라서 요청 제 7 번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을 불허한다.
14. 상기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 혹은 엘리엇 그룹이 2014 년 11 월 1 일부터 2015 년 6 월 4 일까지 소유한 삼성물산의 총 수익 스왑을 입증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제출하겠다고 동의한 청구인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피청구국의 모든 유관 문서의 보유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 C.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의 소통내역에 대한 피청구국의 요청

15.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는 문서들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문서들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모회사가 이전에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간 “부적절한 조정”이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a) 모든 부적절 행위의 외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 이미 제출한 문서들을 법무부에 직접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지시하거나; (b) 청구인으로하여금 엘리엇 그룹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모든 문서에 대한 법무부의 입수를 승인하는 서면승인을 발행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16. 이에 답하여, 청구인은 법무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엘리엇 그룹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입수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서면승인을 발행한다. 청구인은 또한 피청구국이 “부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요청하여 청구인을 겨냥하고, 이러한 요청들을 누설하고, 기타 괴롭힘”을 통해 피청구국의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추후 조치를 제기하거나 중재판정부에 보호 명령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17. 중재판정부는 법무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엘리엇 그룹이 사전 제출한 모든 문서를 입수 가능하도록 하는 청구인의 서면승인을 확인한다. 동 상황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추가로 지시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

**D.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의 소통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요청**

18.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본 중재와 관련된 문서들을 입수하기 위해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혹은 검사들의 소통내역이 추후 고발의 요인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증”을 청구인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해당 소통내역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관련된 보증이 불가능 입장”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삼성물산과의 소통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피청구국의 요청과 병행하여, 피청구국이 “본 중재에 관련된 문서들을 입수하기 위해 법무부 혹은 본 중재를 책임지거나 감독하는 대한민국의 기관이 금융감독원 및 검사들과 소통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도록 중재판정부가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소통내역의 공개가 “중재판정부 및 청구인이 [피청구국]이 관련 문서들을 입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평가하고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문서를 입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내부적으로 소통한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본 중재와 관련된 문서제출을 거부할 시, 그 문서들을 피청구국이 입수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이다.
20.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요청이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의 소통내역과 관련된 피청구국의 요청과 “병행”하여 제기되었음을 확인한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요청이 더 이상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상기 제 17 항 참조). 동 상황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병행 요청 관련, 어떠한 추가 지시의 필요성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를 상대로 피청구국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부재하는 한 청구인의 요청은 시기상조이다.

**중재지: 영국 런던**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